



국민신문고 바로가기 >

✉ 이 메일은 **김명호**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.
(2026년 03월 24일)

처리결과 알림

민원번호	1AA-2603-0572643
신청일	2026-03-15 08:03:30
신청인 구분	개인
신청인 이름	김명호
연락처	070-8770-5659
휴대전화	
주소	033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15-45 1019-201(진관동, 은평뉴타운구파발)(진관동, 은평뉴타운구파발)
전자우편	mkim1795@daum.net
공개여부	공개
진행상황 통보방식	진행상황통지방식(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) 민원답변통지방식(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)
민원제목	조직적인 은평구 주택비리에 대한 "임시 특별 조사관" 임명 신청
민원내용	신청 이유는 다음과 같다 1. 비리근절의 유일한 방법, 관리소장 돈 받아 처먹고 비리 묵인하는 구청장, 국회의원, 구의원들 잡기 위해 2. 은평구청과 관리소장 임상현의 밀착 증거

업자 선정의 기본원칙이 경쟁 입찰임에도 불구하고, 입찰은 거의 없고 소위
 뒷돈(리베이트) 해먹기 쉬운 "수의계약" 대유행, 즉 관리소장이 지꼴리대로
 업자 선정하여 부풀린 가격 지불하는 [형법] 제355조(배임) 횡행하고 있다.

(1) 악착같이 수의계약하기 위해, 벌이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"쪼개기/분
 할" 계약

수의계약(5백만원) 등의 계약금액 상한선 규정한 법조문 피해가는 쪼개기
 계약 근절하기 위하여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
①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
 [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68, [지방
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77조에 쪼개기 계약
 금지 규정하였고

② 대법원도 "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"한다고
 판결(자료3, case.pdf)

국가적으로 쪼개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... 그에 협조하기는커녕

(2) 은평구청은 쪼개기 계약 권고 및 탈세 권장

지난 2.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, 대청그린웍스의 기존계약(방역관리+수목
 방제) 재계약 의결주문하면서 방역관리와 수목방제를 "분할" 계약하겠다고
 임상현이 제출한 [안건4](자료1, 자료2)에 의하면

자료1에는 "구청주무관 권고사항", 대청그린웍스 제출 자료2에는 버젓이
 "면세"라고 기재. 탈세 목적의 쪼개기 계약 => 탈세해서 상납하라는 거 아
 냐?

3. 국토교통부의 무능력

(1) 허구헌날 비리 많다며 피래미만 잡고는 법 제/개정해야 한다는 등 개소
 리

떡고물 생길 세금유용 건수 만드는 거냐? 지키지도 않을 법들 만들면 뭐하
 냐?

[공동주택 관리법], 특히 [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] 제17조(증빙서류) 제7호
 적격증빙,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 [수의계약 대상] 등 잘 만들어
 저 있더군. 이거면 충분해!

(2) 입증된 무능력

[공동주택 관리법] 제93조의 2 위반하며 "은평구 비리 신고"를 부득부득 은
 평구로 이송하여 구청주무관 안산옥*으로 하여금 위법부당한 답변이나 하계
 만드는 꼬락서니만 봐도 니들의 무능력은 입증된 거야

그래서 내가 무료 자원 봉사하겠다는 거다.

피래미 돈 받아 처먹고 비리 묵인하는 고위 공무원들 잡지 않고는 수의계약
 비리근절 못한다

비리 구청장, 국회의원, 구의원들 한번 잡아 보자.

수정/보완 자세한 것 => <https://seokgung.com/corrupt9.htm#03142026>

2026.3.14
김명호

* 3.12일(오후 3-4경), 통화 끝날 때까지 문제없다던 은평구청 안산옥이 13일(오전 6:48경) 안산옥의 비리신고 3시간 후, 오전 10시경 전화로 지가 잘못했다며 다시 답변하겠다고 하더군요
개 어리버리한 거로 봐서는 지가 알아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, 니들이 비리 신고 뚱겨줬냐?

- 첨부 자료
- 1. "구청주무관 권고사항"이라며 방역관리+수목방제의 기존계약을 쪼개기 계약하겠다는 임상현의 의결 주문
 - 2. 쪼개진 방역관리에 당당히 "면세"라고 기재한 대청그린웍스의 견적서
 - 3. 대법원 판결 "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

첨부파일	자료2.jpg
	자료1.jpg
	case.pdf

처리결과

처리기관 정보		나의민원으로 가기
처리기관	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운영과	
담당자	안선형 (044-201-4898)	
민원인 신청번호	1AA-2603-0572643	
접수일	2026-03-16 08:41:25	
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2603-0592729	

처리예정일	2026-04-02 23:59:59.0 (1회연장)
	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: 2026-04-02 23:59:59
	- 사 유 :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. - 연장결정일 : 2026-03-24 13:59:13

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.
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처리결과(답변내용)

답변일	2026-03-24 19:14:30
처리결과 (답변내용)	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1AA-2603-0444048, 1AA-2603-0572643)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2. 신고요지 ○ 공동주택 방역관리용역 및 조경수목 방제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3. 회신내용 ○ 우리 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2017. 10. 19.부터 『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』를 법제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, 신고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신고사항을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 93조의2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조사 및 조치 요구하였으니, 그 결과가 우리 부에 도착하면 검토 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○ 해당 지자체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)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, 완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,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한 차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4.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,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안선형 주무관(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, ☎044-201-4898)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첨부파일	민원신청서.htm

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(국토교통부)

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 (필수)

-
- ☐ 매우만족
- ☐ 만족
- ☐ 보통
- ☐ 불만
- ☐ 매우불만

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(2000자 이내)

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?

-
- ☐ 해결
- ☐ 부분해결
- ☐ 미해결

등록 초기화

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시려면, [나의 이용내역>정보관리](#)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.



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입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이용안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

정부민원안내 콜센터 (국번없이)110 / 시스템관련 이용안내 : 1600 - 8172(대표번호) / 070-4140-1458(일반전화)

상담안내 09:00 ~ 18:00(평일)
